

제 호

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서

- 명칭:
- 소재지:
- 대표자:
- 업무 범위:

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제4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

변경사항 등

연 월 일

내용